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박예린 · 박인혜

I. 목표(Goal)의 의미

1. 설정 배경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의 구축’은 이미 MDGs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하지만 공여국들이 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각종 개발문제 해결을 공언한 것에 비하여 실제 이행상황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유엔에서 지정한 최빈국(LDCs) 원조제공에 대한 유엔의 권고 기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0.15~0.2%를 기 달성한 국가들은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8국뿐이며, 대부분이 공언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UNSC 2014).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ODA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2008년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공여국들의 ODA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ODA의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성 증진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이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재원 동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UNSC 2014).

아울러 수원대상국 및 대상자들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 수행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수원당사자 뿐 아니라 정부, 개발협력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과 펀드 및 투자자들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의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다(UNSC 2014).

이처럼 SDGs 목표 17번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존 MDGs 체제 하에서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반성과, 점차 복잡해지고 다각화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각종 이슈와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재원 마련 및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새로운 재원 동원,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 등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범위와 분야의 이행수단과 범세계적 파트너십 형성을 규정하고 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목표의 정의와 의미

기존 MDGs의 마지막 8번 목표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은 나머지 7개의 목표가 수원국들이 주로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공여국들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것이었다. 반면, 새로운 개발목

표에서는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비단 공여국들의 책무와 관련된 주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주체들과 관련한 이슈들로 확대되어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유형에 있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각자 개발주체가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가하고 개발협력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SDGs 17번 목표에서는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및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발표된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 2030년까지 존엄의 길-빈곤의 종식, 모든 삶의 전환, 그리고 지구환경 보호(Secretary-General’s Synthesis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The Road to Dignity by 2030-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에서도 개발재원(Financing), 과학기술과 혁신(Technology, Science and Innovation),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Investing in capac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김지현 2015). 이는 기존의 불충분한 ODA 재원을 뛰어넘어 ODA/GNI 0.7% 달성 이행 등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데이터와 관련된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혁명(Data Revolution)’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협력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각 개발주체별로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을 중요한 책무로 간주하고 있다.

II. 목표별 분석

1. 목표의 논리구조

SDGs 제 17번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는 현재 1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존 MDGs의 목표 8번의 목표가 6개였던 것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SDGs 내에서도 단일 목표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17은 개발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무역(Trade), 시스템 이슈(Systemic Issue)의 큰 분야들로 나누어져 이에 대한 하위 요소로서 세부 목표들이 나누어져 있다. 시스템 이슈는 다시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다자간 파트너십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데이

터모니터링 및 책무성(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의 하위 요소로 구분된다. UNSD가 제공한 세부목표들과 후보지표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UNSD 2015b).

〈표 17.1〉 ‘목표 17’의 세부목표와 지표 (안)-UNSD 후보지표

개발재원(Finance)	
17.1 개발도상국의 세금과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체계) 강화	
제안된 우선지표: GDP 대비 환경세로부터 파생된 세수를 포함한 세수(원천별)의 구성요소	
1	GDP 대비 총 세금
2	1인당 총 세금(달러가치)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약정한 ODA/GNI 0.7%를 달성하는 등 ODA 활동을 완수해야하며, 이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	
1	(제안된 우선지표) OECD/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순ODA, 총ODA, 저개발국(LDCs)으로의 ODA 비율(%)
2	OECD/DAC 공여국의 기본사회서비스(기본교육, 1차 보건의료, 영양, 안전한 물과 위생)로의 총 양자 및 부문별 배분가능(sector-allocable) ODA의 비율
17.3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동원	
제안된 우선지표: 총자금유입(Total Capital Inflow, TCI)	
1	송금비용
2	최상위(top-tier)의 고비용 송금 수수료(corridors)
17.4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부채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고, 부채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채무국의 외채문제 고려	
제안된 우선지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의 백분율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	
1	중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의 결정시점(decision points)에 도달한 총 국가의 수 및 중채무빈곤국의 완성시점(completion points)에 도달한 총 국가들의 수(누적)
2	중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IPC) 하에서 행해진 채무면제
17.5 최빈국에 투자촉진 체제 도입 및 시행	
제안된 우선지표: 국가별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하거나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국내 및 투자정책 개혁의 수	
1	새로운 또는 기존의 투자진흥기관의 지속가능개발을 지향하는 목표의 채택 및 이행
2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포함하는 투자체제에서 정책 변경의 수
기술(Technology)	
17.6 UN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정 메커니즘과, 합의 시 국제적 기술 증진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남-북·남-남·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 합의에 의한 지식공유 증진	
제안된 우선지표: 특허정보(WIPO 특허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성과 국제 IP 시스템의 사용	
1	기존의 특허정보의 접근성(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2	교환의 수-과학자들과 기술직원의 교환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과 확산
제안된 우선지표: 환경재에 부과된 평균실행관세(average applied tariffs)	
1	GDP 대비 총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투자
2	1인당 총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투자(달러가치)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과학기술 혁신 역량배양 메커니즘의 완전 가동 및 ICT 등 적정기술 사용의 향상
제안된 우선지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비율	
1	인터넷 보급
2	인터넷 접속의 질(주파수대역)
3	(새로 제안된 지표)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보유한 공공도서관의 비율(%)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17.9	개발도상국이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국가 계획 지원을 목표로 하는 역량배양 실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향상
제안된 우선지표: 지속가능개발의 3차원(국가 및 거버넌스 내에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을 목표로 하고, 개도국의 전반적 정책혼합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을 포함하는 금융 및 기술지원의 달러가치	
1	2020년과 비교하여 2016년까지 SDGs 실행을 위해 정부에 의해 승인된 국가계획의 수(비율)
2	남남협력을 통한 역량배양의 실질 상승
무역(Trade)	
17.10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나온 결론 등을 포함하여, WTO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평등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
1	WTO 회원국들 중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비율
2	(제안된 우선지표) 세계 가중평균관세: a. 특혜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이 적용된, b. 선진국(Devd)/개도국(Dvg)/저개발국(LDCs)이 적용된, c. 선진국(Devd)/개도국(Dvg)/저개발국(LDCs)에 의해 적용된, d. 주요부분별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 중 최빈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폭 증대
제안된 우선지표: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협력그룹별, 주요 분야별)	
1	협력 그룹별 및 주요부분별 개도국 수출의 진화 모니터링. 가령, a) 총수출에서 첨단기술 콘텐츠 수출의 비율, b) 총수출에서 노동집약적 수출(친빈곤 수출)의 비율, c) 수출 다변화(생산물별; 시장목적지별)
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관리로부터 파생된 저개발국의 비석유 수출부문의 가치
17.12	WTO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적용을 투명하고 단순화하여 시장진출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을 보장하는 등 모든 최빈국이 지속적으로 무관세 및 무할당 시장 진출 이행을 시의 적절하게 실현

1	(제안된 우선지표) 개도국과 저개발국(LDCs)이 직면한 부문별 평균 관세
2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 이용의향(Preferences utilization)
시스템 이슈(Systematic Issues)-정책과 제도의 일관성(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향상
1	(제안된 우선지표) 국내총생산(GDP)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17.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
제안된 우선지표: 환경, 인권 및 노동 수단을 포함한 관련 국제 수단을 비준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수	
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안전, 보안, 환경보호, 민사책임, 보상 및 보험) 하의 관련국제수단을 비준하고 이행한 국가의 수
2	화학물질 및 폐기물 협약과 프레임워크의 조정된 이행을 위한 다분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개별국가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존중
제안된 우선지표: 공적개발원조(ODA) 혹은 차관계약서, 국제투자협정(IAs) 및 지역무역협정(RTAs) 등에 구현되어 있는 제한(constraints)의 수	
1	재정정보공유에 합의한 국가의 수
2	재정정보의 자동이전(Automatic Transfer)
시스템 이슈(Systematic Issues)-다자간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17.16	모든 국가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지식,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완성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향상
제안된 우선지표: 포용적 검토(inclusive reviews)를 통해 강화된 상호책임성	
1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다자 파트너십 참여자의 수 변화
2	a) 파트너십의 유형, b) 지역: 글로벌, 지역적, c) 목표: 기술과 전문지식 공유 등, d) (파트너십에 적극적인)국가 유형에 있어 분류(Classification)와 행보(trjectory)
17.17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독려 및 증진
1	(제안된 우선지표) PPP 프로젝트의 수
2	개도국에 의해 실행된 PPP 프로젝트의 수
시스템 이슈(Systematic Issues)-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SIDs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득·젠더·연령·인종·민족·이민 신분·장애·지리적 위치와 기타 국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종합한 수준 높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능력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역량배양 지원 향상
제안된 우선지표: 국내수준에서 생산된 세분화(disaggregation)된 지속가능개발 지표들의 비율(proportion)	
1	국내통계법 ([a] 통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b] 자료수집을 의무화하고, [c] 국가행정자료로의 접근을 보장하는)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수
2	공식통계(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수준의) 편집 조정을 위한 공식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배양을 지원
제안된 우선지표: 지속가능경제복지 지수 (Nordhaus/Tobin)	
1	지속가능경제복지(Nordhaus/Tobin) 지표
2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출처: UNSD(2015b)

SDGs 17번 목표의 각 세부목표와 후보지표들에 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2.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목표체계 분석

1) 개발재원(Finance)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개발재원의 마련, 즉 자원 동원 및 자금조달이 거론되고 있다. 개발재원의 세부목표들은 특히 금년 9월에 확정될 SDGs에 앞서 올 7월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제3차 개발재원 회의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 결과 방향성에 따라 SDGs의 세부방향도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세부목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2〉 개발재원부문 세부목표 및 지표 내용

17.1 개발도상국의 세금과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체계) 강화	
• 제안된 우선지표: GDP 대비 환경세로부터 파생된 세수를 포함한 세수(원천별)의 구성요소	
• 제안된 지표 1: GDP 대비 총 세금	
• 제안된 지표 2: 1인당 총 세금(달러가치)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약정한 ODA/GNI 0.7%를 달성하는 등 ODA 활동을 완수해야하며, 이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	
• 제안된 우선지표(기존 지표 1): OECD/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순ODA, 총ODA, LDCs으로의 ODA 비율 (%)	
• 제안된 지표 2: OECD/DAC 공여국의 기본사회서비스(기본교육, 1차 보건 의료, 영양, 안전한 물과 위생)로의 총 양자 및 부문별 배분가능(sector-allocable) ODA의 비율	
17.3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동원	
• 제안된 우선지표: 총자금유입(Total Capital Inflow: TCI)	
• 제안된 지표 1: 송금비용	
• 제안된 지표 2: 최상위(top-tier)의 고비용 송금 수수료(corridors)	

〈표 17.2〉 개발재원부문 세부목표 및 지표 내용 (계속)

17.4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부채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고, 부채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채무국의 외채문제 고려

- 제안된 우선지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의 백분율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
- 제안된 지표 1: 중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의 결정시점(decision points)에 도달한 총 국가의 수 및 중채무빈곤국의 완성시점(completion points)에 도달한 총 국가들의 수(누적)
- 제안된 지표 2: HIPC 이니셔티브 하에서 행해진 채무면제

17.5 최빈국에 투자촉진 체제 도입 및 시행

- 제안된 우선지표: 국가별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하거나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국내 및 투자정책 개혁의 수
- 제안된 지표 1: 새로운 또는 기존 투자진흥기관의 지속가능개발을 지향하는 목표의 채택 및 이행
- 제안된 지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포함하는 투자체제에서 정책 변경의 수

이번 SDGs 17번 목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개발재원’ 혹은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이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OECD DAC 공여국들은 현재 유엔권고 기준인 ODA/GNI 0.7%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UNSC 2014) 특히 2010년 전체 ODA 총액이 최고치에 다다른 이후 2년 연속으로 총 6% 이상 감소하는 등 ODA 총액 추이는 계속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OECD 2013).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발재원 동원 방식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의적인 개발재원 동원 방식에 대한 확대 시행(scaling-up)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재원의 부족을 메우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에코시스템 구축 기금 마련 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각종 개발 문제 대응을 위한 민간재원의 효과적인 동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UNSC 2014).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우선,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제 1차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의 결과물로서 ‘몬테레이 합의 선언(Monterrey Consensus)’이 채택되었다. 몬테레이 선언은 국내 재원의 조성 및 동원, 민관파트너십을 위시한 민간자금 동원을 통한 국제 재원 동원 강화, 국내외 투자 여건 조성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개발재원에 대한 후속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는 기존의 몬테레이 선언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동원 및 다양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고, 개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자금거래 방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년 7월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제 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기존 몬테레이 및 도하 합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창의·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 실행계획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의 이슈를 다루는 세부목표와 지표의 설정에 있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유일하게 세금 이슈를 다루고 있는 세부목표 17.1은 ‘개도국의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한 국내 재원 동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조개혁에 있어 중요한 주된 부분들, 즉 탈세와 조세피난처를 비롯한 조세회피의 문제, 다국적기업 이전에 따른 잘못된 가격책정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뤄야 할 문제들을 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불어, 세부목표는 결국 개도국의 징수 역량개선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안된 지표는 현재 징수상태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검토되기에는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에 새로 제안된 우선지표에서 세수의 구성요소, 특히 원천별 구성요소를 다룬 것은 이 지표를 통한 분석과 이를 통한 원천별 세수 개선 및 강화의 좀 더 생산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지표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부목표 17.3의 논의에서는 추가적인 재원, 특히 민간재원의 동원을 다루고 있는데,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참여만을 독려함으로써, 지나친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나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부문은 개발의 논의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고 투명성, 책무성 등의 개발에 있어 근본적인 기준을 종종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투명성, 책무성이 UN 시스템 안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평가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는다면 개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개도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부지표와 관련해, 이전에 제안된 지표들이 개발재원 중 일부분인 ‘송금(remittances)’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제안된 우선지표에서는 총자금의 유입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개발재원유입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표가 제안되어 보완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4번 목표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뤄져왔던 개도국의 부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부목표가 부채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외채문제를 “고려(address)”한다는 수준에서 머

물고 있는데, 이는 구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책무(accountability)를 지우지 못하는 단어로써, 실제로 외채의 “탕감(cancel)” 수준의 조치(action)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안된 우선지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정되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계량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17.5번 목표에서는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가를 위한 장기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민간재원의 효과적인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을 갖는다.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스템은 체계나 심도가 미비하고 주로 단기금융을 하는 상업은행들이 대부분 금융시스템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자연적으로 지분투자나 채권 시장이 더디게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통한 개발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나 관련 공공부문의 주체들이 민간부문 주체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가치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최빈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시에 잠재적인 부작용 또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안된 지표들이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민간 기업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밝혀지는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앞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현재 제시된 지표2의 경우, ‘SDGs를 목표로 하는 국가개발전략이나 안전장치 정책개혁의 수’가 반드시 최빈국의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안된 우선지표를 비롯한 세부목표와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기술(Technology)

기존 MDGs 체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초점을 두었다면, SDGs에서는 중요 이행수단으로서 과학기술정보(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TI)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기술에 대한 초점이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12월 SDGs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①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 메커니즘 설립, ② 기술 지식 역량배양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③ 기술협력 정책 프레임워크 조정, ④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기술 개발이전보급, ⑤ SDGs와 TRIPs(국제지적재산권 체제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간 일관성 제고, ⑥ 유해기술 투입 공공자원을 SDGs 이행에 투입, ⑦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선순환구조 확립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이행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술 분야의 SDGs 세부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7.3〉 기술부문 세부목표 및 지표 내용

17.6 UN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정 메커니즘과, 합의 시 국제적 기술 증진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남-북·남-남·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 합의에 의한 지식공유 증진 • 안된 우선지표: 특허정보(WIPO 특허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성과 국제 IP 시스템의 사용 • 제안된 지표1: 기존의 특허정보로의 접근성(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 제안된 지표2: 교환의 수-과학자들과 기술직원의 교환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과 확산 • 제안된 우선지표: 환경재에 부과된 평균실행관세(average applied tariffs) • 제안된 지표1: GDP 대비 총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투자 • 제안된 지표2: 1인당 총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투자(달러가치)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과학기술 혁신 역량배양 메커니즘의 완전 가동 및 ICT 등 적정기술 사용의 향상 • 제안된 우선지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비율 • 제안된 지표1: 인터넷 보급 • 제안된 지표2: 인터넷 접속의 질(주파수대역) • 새로 제안된 지표3: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보유한 공공도서관의 비율(%)

목표 17.6번부터 17.8번은 기술진보와 혁신이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이행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목표 17.6에서는,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제안된 지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특허정보 및 국제 IP 시스템의 사용 및 접근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이 평등한 환경에서 도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더불어 세부목표에서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안된 지표들에서는 ‘특허정보’만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세부지표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세부목표 17.7이 유리한 기술의 개도국으로의 이전 및 보급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우선지표로 제안된 ‘환경재에 부과된 평균실행관세’가 세부목표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확실치 않으며, 왜 ‘환경재’에 초점이 맞춰졌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아 세부목표와 지표 간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세부목표 17.8에서도 세부목표는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 역량 배양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지만, 지표들은 ‘인터넷 사용’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

이다. 개별 인터넷 사용의 증가가 개도국의 과학기술 역량 배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는 비약이 있으며, 더 나아가 기술은행과는 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전반적으로 세부 목표와 지표 간의 상관성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표 17.4〉 역량강화부문 세부목표 및 지표 내용

17.9 개발도상국이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목표로 하는 역량배양 실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향상 • 제안된 우선지표: 지속가능개발의 3차원(국가 및 거버넌스 내에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을 목표로 하고, 개도국의 전반적 정책혼합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을 포함하는 금융 및 기술지원의 달러가치 • 제안된 지표 1: 2020년과 비교하여 2016년까지 SDGs 실행을 위해 정부에 의해 승인된 국가 계획의 수(비율) • 제안된 지표 2: 남남협력을 통한 역량배양의 실질 상승
--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는 ‘아젠다 21’이나 ‘리우+20’의 결과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문서에서 상시적으로 범분야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역량강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과학-정책-사회 간 점점 모색, 모니터링과 평가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수, 비율, 달러가치 등의 계량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역량과 관련해 ‘어떤’ 역량을 배양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된 지표1과 같이 기간 및 목표 달성의 기한(deadline)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무역(Trade)

무역은 민간투자와 더불어 기존 ODA의 한계를 넘어 개도국의 기술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시장 형성 등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의 과도한 농업보조금 지급과 보호주의 무역 논쟁 등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UNSC 2014). Post-2015 체제에서는 무역을 둘러싼 논란을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구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행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역 분야에 관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7.5〉 무역부문 세부목표 및 지표

17.10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나온 결론 등을 포함하여, WTO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평등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

- 제안된 우선지표: 세계 가중평균관세
- 제안된 지표 1: WTO 회원국들 중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비율
- 제안된 지표 2: 세계 가중평균관세: a. 특혜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이 적용된, b. 선진국(Devd)/개도국(Dvg)/저개발국(LDCs)이 적용된, c. 선진국(Devd)/개도국(Dvg)/저개발국(LDCs)에 의해 적용된, d. 주요부문별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 중 최빈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폭 증대

- 제안된 우선지표: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협력그룹별, 주요 분야별)
- 제안된 지표 1: 협력 그룹별 및 주요부문별 개도국 수출의 진화 모니터링. 가령, a) 총수출에서 첨단기술 콘텐츠 수출의 비율, b) 총수출에서 노동집약적 수출(친빈곤 수출)의 비율, c) 수출 다변화(생산품별; 시장목적지별)
- 제안된 지표 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관리로부터 파생된 저개발국의 비석유 수출부문의 가치

17.12 WTO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적용을 투명하고 단순화하여 시장진출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을 보장하는 등 모든 최빈국이 지속적으로 무관세 및 무할당 시장 진출 이행을 시의 적절하게 실현

- 제안된 우선지표(기존 지표 1): 개도국과 저개발국(LDCs)이 직면한 부문별 평균 관세
- 제안된 지표 2: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 이용의향(Preferences utilization)

비록 무역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일부 개도국의 상거래 규모는 오히려 세계 평균 수준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UNSC 2014).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러한 개도국들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빈곤감축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도국들 이외의 다른 작고 빈곤하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개도국들, 특히 최빈국들의 경우에는 무역의 각종 혜택을 누리기에는 인프라나 기본 여건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들이 생산적인 무역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개발과 왜곡된 시장 구조개선, 그리고 복잡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세부 목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목표에 포함되

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발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WTO체제 하에서 동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도하개발아젠다의 “개발친화적” 결과가 “포함되는” 수준에 머물게 되고, SDGs 논의 내 무역의 기본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세부목표 전반에서 개발도상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즉 LDCs를 비롯한 개도국을 위한 농산품관련 특별대우라든지, 개도국의 수출세를 없애는 등의 공정무역을 위해 다뤄져야 할 민감한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평등한 무역을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지현 2015). 물론 Post-2015 개발 아젠다가 특정 국가 간의 무역 규칙을 제정할 수 없고 이는 WTO의 권한에 속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Post-2015 개발 아젠다를 통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무역과 관련한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고, 국내적인 진보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또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ODI 2014).

세부적으로는, 세부목표의 달성 기한 및 계량화를 명시하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실현할 것을 표명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여국-개도국 간의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개도국들이 무역활성화를 이루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지속가능하게 통합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ODI 2014).

5) 시스템 이슈(Systemic Issues)

시스템 이슈는 크게 정책 및 제도의 일관성(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의 세 가지 하위 분야로 다시 나누어진다. 각 분야의 세부목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6〉 정책과 제도의 정합성 부문 세부목표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향상
• 제안된 우선지표: 국내총생산(GDP)
• 제안된 지표 1: 국내총생산(GDP)
• 제안된 지표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표 17.6〉 정책과 제도의 정합성 부문 세부목표 (계속)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

- 제안된 우선지표: 환경, 인권 및 노동 수단을 포함한 관련국제 수단을 비준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수
- 제안된 지표 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안전, 보안, 환경보호, 민사책임, 보상 및 보험) 하의 관련국제수단을 비준하고 이행한 국가의 수
- 제안된 지표 2: 화학물질 및 폐기물 협약과 프레임워크의 조정된 이행을 위한 다분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개별국가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존중

- 제안된 우선지표: ODA 혹은 차관계약서, 국제투자협정(IITAs) 및 지역무역협정(RTAs) 등에 구현되어 있는 제한(constraints)의 수
- 제안된 지표 1: 재정정보공유에 합의한 국가의 수
- 제안된 지표 2: 재정정보의 자동이전(Automatic Transfer)

〈표 17.7〉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부문 세부목표

17.16 모든 국가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지식,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완성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향상

- 제안된 우선지표: 포용적 검토(inclusive reviews)를 통해 강화된 상호책임성
- 제안된 지표 1: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다자 파트너십 참여자의 수 변화
- 제안된 지표 2: a) 파트너십의 유형, b) 지역: 글로벌, 지역적, c) 목표: 기술과 전문지식 공유 등, d) 국가유형(파트너십에 적극적인) 에 있어 분류(Classification)와 행보(trajecory)

17.17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독려 및 증진

- 제안된 우선지표(기존 지표1): PPP 프로젝트의 수
- 제안된 지표 2: 개도국에 의해 실행된 PPP 프로젝트의 수

〈표 17.8〉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부문 세부목표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SIDs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득·젠더·연령·인종·민족·이민 신분·장애·지리적 위치와 기타 국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종합한 수준 높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능성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역량배양 지원 향상 - 제안된 우선지표: 국내수준에서 생산된 세분화(disaggregation)된 지속가능개발지표들의 비율(proportion) - 제안된 지표 1: 국내통계법([a] 통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b] 자료수집을 의무화하고, [c] 국가 행정자료로의 접근을 보장하는)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수 - 제안된 지표 2: 공식통계(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수준의) 편집 조정을 위한 공식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배양을 지원 - 제안된 우선지표(기존 지표 1): 지속가능경제후생 지수(Nordhaus/Tobin) - 제안된 지표 2: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 간 파트너십 증진, 그리고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과 관련한 부분 모두는 현재 개발협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로서, SDGs에서도 역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 간(다자 간) 파트너십은 향후 개발협력에서 새로운 개발금융과 재원의 동원(마련), 혁신에 대한 촉매제 작용, 그리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목표 17.13의 경우, ‘국내총생산’과 같은 지표가 글로벌 거시경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더불어 이 지표를 통해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의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 이렇듯, 세부목표를 담아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세부목표 17.14 및 17.15의 지표의 경우, ‘관련 국제 수단(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제한(constraints)의 수’, ‘리더십에 대한 존중’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다자간 파트너십 부문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및 파트너십 선정기준, 사전평가, 책무성 및 투명성 측정과 더불어 UN총회에 파트너십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파트너십에 있어 과도한 권한 부여가 국가 및 UN 회원국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uchhala and Sengupta 2014).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세부목표 17.17의 지표의 경우에도 PPP 프로젝트의 수의 증가가 파트너십 증진으로 이어

진다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의 증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의 세부목표와 관련해서는 각 목표의 기한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지표들이 개도국의 통계관련 역량배양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역량 강화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목표 17에서 다루고 있는 이행수단의 이슈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새로운 SDGs시대 하, 개발협력분야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올해 확정될 SDGs 17번 목표에서는 개발재원 목표들이 우선적 순위로 나올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동원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의 고위급 패널은 이와 관련해 SDGs 목표에서의 개발재원 동원이 몬테레이 선언의 큰 틀을 기반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개발재원 총회의 결과 또한 향후 SDGs 17번 목표의 설정 방향 및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UN Task Team은 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강력한 집단 의지와 행동, 그리고 책무를 발휘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구현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익을 누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UNSC 2014). 2013년 6월 에티오피아에서 열렸던 유엔 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① 새천년선언, 몬테레이 및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MDGs 8번 목표를 기초로 하여 발전할 것과, ② 빈곤의 종식과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 ③ ODA를 토대로 하여 각종 책무가 잘 이행될 것을 보장할 것,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결정자들이 글로벌 파트너십 담론과 이행에 참여할 것, 그리고 ⑤ 모든 수준에서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3. 목표체계 평가

SDGs 17번 목표는 기존의 MDGs에서 목표 달성의 이행수단으로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 목표들을 좀 더 분야별로 구분하여 세세하게 나누고 있다. 특히,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었듯이, 소외계층의 혜택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과 혁신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무역증진에 대한 세부 목표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각 분야의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를 강조하였다(UNGA 2014). 또한, Rio+20의 결과문서 등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 즉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모든 개발주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가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MDGs의

8번 목표가 주로 공여국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 하였다면, SDGs 17번 목표는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개도국 진영 간의 큰 이해격차로 인해 세부목표들이 대부분 모호한 언어로 제시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무성과 관련해 선진국이 이행수단의 이슈를 주도하여 ‘누가’, ‘어떻게’, ‘얼마나’에 대해 더 상세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도국의 시스템 미비 및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세부목표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지표들의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와 지표들의 추진일정(timeline) 및 기한(deadline)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동 목표 마지막 부분에서 데이터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것과 같이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해서도 측정 기준 및 수단과 모니터링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세부목표 및 지표들의 책임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문제 또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방안

1.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RF-4) 등 중요한 국제회의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출범에도 기여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한 독특한 개발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Post-2015 시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정부와 유관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행위자들과 함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Cooperation, GPEDC)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 간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특히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OECD DAC 중심의 공여국들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들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미디어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 역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과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개발협력과 개발재원, 그

리고 SDGs의 각 특정 분야에 맞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형성·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DGs 초안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차원에서는 정부와 유관기업을 중심으로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SDGs 17번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책무 프레임워크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올해 예정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 등 개발협력 통계 데이터 품질 강화와 개발협력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2. KOICA의 대응방안

KOICA는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SDGs의 이행수단인 다자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수립·수행하는 데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기존의 글로벌사회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프로그램, 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 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행동프로그램(Development Action Program, DAP)을 통해 창의·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등에 대비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 데이터 확보 및 관리 등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며 원조투명성과 데이터 혁명 관련 국제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ODA와 민간재원의 연계 등 개발재원 다각화, 무역을 위한 원조, 개도국 및 최빈국·취약국에 대한 과학기술 및 혁신 전파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개발 노력 강화를 통하여 KOICA가 Post-2015 시대에도 명실상부한 지식공유와 창의혁신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19.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22.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Muchhala, Bhumika. 2014. “Means of Implementation nearly toppled process of SDGs agenda.” <https://www.globalpolicy.org/component/content/article/252-the-millennium-development-goals/52671-means-of-implementation-nearly-toppled-process-of-sdgs-agenda.html>, 검색일: 2015.06.10.
- Muchhala, Bhumika and Ranja Sengupta. 2014. “SDGs: Means of implementation in the latest ‘zero draft’ fall well below expectations.”, <https://www.globalpolicy.org/component/content/article/252-the-millennium-development-goals/52656-sdgs-means-of-implementation-in-latest-zero-draft-fall-well-below-expectations.html>, 검색일: 2015.06.10.
- ODI. 2014. “Trade and the post-2015 agenda.”,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9016.pdf>, 검색일: 2015.06.23.
- _____. 2015.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9654.pdf>, 검색일: 2015.06.10.
- OECD DAC. 2013. “Aid to poor countries slips further as governments tighten budgets.” <http://www.oecd.org/dac/stats/aidtopoorcountriesslipsfurtherasgovernmentstightenbudgets.htm>, 검색일: 2015.06.23.
-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Revised Working Draft (Version 7).
- Sengupta, Mitu. 2014. “Are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y good?”, <http://mitusengupta.com/2014/10/07/sustainable-development-goals-a-better-pact-is-possible/>, 검색일: 2015.06.10.
- UNGA.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New York: The United Nations (A/68/L.75/Rev.1),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ports/SG_Synthesis_Report_Road_to_Dignity_by_2030.pdf, 검색일: 2015.06.10.
- UNSC. 2014. “TST Issues Brief: Means of Implementation; Global Partnership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content/documents/2079Issues%20Brief%20Means%20of%20Implementation%20Final_TST_141013.pdf, 검색일: 2015.06.09.

UNSD. 2015a.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 list.", <http://unstats.un.org/sdgs/2015/05/29/first-proposed-priority-indicator-list/>, 검색일: 2015.06.08.

_____. 2015b. "List of Proposals.", <http://unstats.un.org/sdgs/first-iaeg-sdgs-meeting/>, 검색일: 2015.06.08.

Zeballos, Ana. 2015. "Statistics for the SDGs: the devil is in the indicators.", <https://www.globalpolicywatch.org/blog/2015/03/17/statistics-sdgs-devil-indicators/>, 검색일: 2015.06.10.

